

#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 Korea's Response for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the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김 회 철\*  
Hee Chul Kim

### 요약 (ABSTRACT)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몇 개월 앞두고 전자상거래가 급팽창함에 따라,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 확보 및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규범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이러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시대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국가적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영향과 현황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국제규범화 동향과 주요 과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 Word : 인터넷 전자상거래,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Internet Round

<목 차>	
I. 서 론	IV.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II.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영향과 전망	1. 관세 및 내국세 2. 지적재산권보호 3. 보안과 암호화 문제 및 사생활보호 4. 인터넷 내용물의 규제 및 소비자 보호
III.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규범화 동향	V. 결론 ※ 참고문헌
1. 국제기구의 규범화 동향 2. 주요국의 규범화 동향 3. 국제규범화 동향의 평가와 전망	

\* 청운대학교 국제무역정보학과 조교수

## I. 서 론

오늘날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은 경제, 사회 및 생활의 각 방면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경제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어, 세계경제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거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가지 경제규범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인터넷 이용자는 14,000만 명을 넘었으며, 10년 이내에 10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관별로 예측은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2002년경 약 3,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21세기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할 새로운 무역라운드, 소위 밀레니엄 라운드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인터넷 라운드(internet round) 또는 사이버 라운드(cyber round)로 호칭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개별 소비자와 정부는 물론, 기업에 새로운 사업성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래 산업구조의 변화, 사회·문화 등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한 시장분석과 전략설정을 통해 인터넷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때만이 뒤 처지고 않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특히 OECD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전자상거래시장의 주도권을 선취하고 자국에게 유리한 다자간 규범제정을 위하여 저마다 기본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WTO, APEC, UNCITRAL 등 국제기구도 그 고유분야에 따라 경쟁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sup>25)</sup>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국내의 전자상거래시장이 현재 초기단계이고, 선진국과는 상거래 환경이 다르며, 또한 여러 가지 제반 요건 및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비교할 만한 성장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국가적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下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영향과 현황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국제규범화 동향과 주요 과제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영향과 현황

### 1.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특성

25) 정보산업계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최근 이루어진 한 조사에 따르면 21세기를 주도할 정보기술로서 응답자 중 71.7%가 전자상거래를 꼽았다(서울경제신문, 1998. 9. 6.).

인터넷은 소매 및 직접마케팅방식 역시 개혁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전세계의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로부터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즉 소비자들은 안방에 앉아서 이러한 상품을 그들의 컴퓨터나 TV로 보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품이 얼마나 서로 잘 어울리는지를 보고, 선택한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U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1997).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조직 모두를 포함하여 텍스트, 음성, 화상을 포함한 디지털 데이터의 처리와 전송에 기초한 상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거래를 말한다(OECD, 1997a).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여러 종류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 제품 설계, 제조, 광고, 상업적인 거래, 회계 정산 등을 포함한 -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한다(ECOM, 1996).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기업간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거나, PC통신의 홈쇼핑, 홈뱅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거래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협의의 전자상거래란 웹(web)상의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 한다. 거래되는 상품에는 전자부품과 같은 실물뿐만 아니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뉴스, 오디오, S/W와 같은 디지털 상품<sup>26)</sup>도 포함되며, 이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상에서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공급업자, 정부, 경쟁자, 회계사 등을 찾아내는 행위를 포함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PC통신이 국내의 PC사용자만을 고객으로 확보하여 거래를 행하는데 반해, 전세계인과 시간 및 장소에 관계없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통신방법인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사회가 진전되면 필수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보편화될 것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홍준형, 1996).

한편, 이른바 종이 없는 거래(paperless Commerce)로 불리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서, 자료의 교환이나 거래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Ian Walden, 1990).

첫째, 종이서류의 작성 및 전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즉 종이서류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경감되고, 작성된 서류의 열람, 우송(특히 다수 당사자에게 우송하는 경우 두드러짐)에 있어서도 거의 시간을 요하지 않게 되며, 부수적으로 기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용이하여 자료의 분석 및 새로운 형태로의 변환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종이서류의 작성, 송달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엄청난 규모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절감효과도 상당한 것인 바, 최근 정부의 비용절감운동 차

---

26) 이는 소프트웨어, 음악, 오락 등 온라인상에서 주문, 대금정산 및 배송까지의 전체 거래가 완결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원에서 전자문서 교환의 도입 및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셋째, 업무진행 과정이나 의사표시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 종이서류의 경우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서류가 전달되었는지 여부, 언제 전달되었는지, 수신자가 열람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진행에 능률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분쟁 소지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넷째, 정보의 순환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그 동안 수작업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새로운 사무처리 또는 경영방식의 도입이 가능하다.

다섯째, 이러한 업무능률의 향상은 기업 또는 조직의 총체적 경쟁력 강화를 가져온다. 이는 특히 국제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경쟁력의 경우 현저하다.

여섯째,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유통망이나 홍보에 있어 열악한 우량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장점에 못지 않게 전자상거래의 도입과 확대는 많은 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첫째, 의사표시가 담겨 있는 전자문서의 경우 발신인이나 명의인의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여하히 가릴 수 있느냐는 점

둘째, 위조나 변조가 있는 경우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방법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

셋째, 거래정보의 노출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넷째, 교섭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심화되어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거대 대기업의 필요에 따른 수직적 형태의 EDI의 경우 그에 응해야 하는 납품업체나 하청업체는 EDI거래에 필요한 비용부담 못지 않게 거래조건에 있어 정형화된 대기업의 요구에 따르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는 그 속성상 많은 장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문제점의 많은 부분은 단순한 법규정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진보를 통해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적 현상의 추이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심화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고, 효과적인 법제도의 정비(비록 그것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명제란 점이다.

## 2.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영향

컴퓨터·네트워크 기술의 진전은 인류의 역사상,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변혁이라고 말해지고 있는데, 상거래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가능성은 변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네트워크를 사용한 거래, 즉 전자상거래가 전자출판, 소프트웨어 판매, 정보판매 등과 같은 기업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이런 기업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Web TV의 등장으로 TV뉴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인터넷상점

의 등장으로 상품정보를 입수하는 방법, 주문하는 방법 또한 달라진다. 전화, 팩스나 복사기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것처럼 E-Mail, Web 사이트 등도 그런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사회·문화측면과 국제무역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 (1) 사회·문화에의 영향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표 II - 1>과 같이 사회·문화적 측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II - 1>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 구매의사결정시 제품(기업) 신뢰도의 영향력 증대
- 구매대상품목은 주로 정보, 생필품, 공산품 등에 국한됨
- 소비자들의 선택영역 확대로 세계시장 접근용이
- 소비자들의 여가활동 증대
- 다양한 문화와 언어 등에 관한 정보노출로 생활양식의 변화 가능성
- 광고와 실물의 차이 발생 가능성

### (2) 국제무역에의 영향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표 II - 2>에서와 같이 무역거래단계, 상품교역단계 그리고 서비스교역단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II - 2>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무역거래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광고단계 : 광고의 규제정도에 따른 광고제공 사이트의 비규제국가로의 우회</li><li>- 구매단계 : 무역업자에 대한 신분확인 문제</li><li>- 인도단계 : 저작권 보호문제</li></ul>
상품교역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저비용으로 시의 적절한 정보수집</li><li>- EDI를 통한 비용절감</li></ul>
서비스교역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보검색엔진의 비 중립성</li><li>- 상표권과 도메인명과의 일치문제</li></ul>

### (3) 기업에의 영향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표 II - 3>과 같이 기업 내부적 영향과 기업 외부적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lt;표 II - 3&gt;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기 업 내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고객 서비스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전세계 대상의 24시간 영업 가능</li> <li>· 고객정보 축적에 의한 고객ニ즈 충족 (고객ニ즈의 신속한 파악과 대응)</li> </ul> </li> <li>- 비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채널 단축</li> <li>· 매장 및 종업원 축소로 고정비용 감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기반 미성숙</li> <li>- 보안유지</li> <li>- 낮은 통신속도</li> </ul>
기 업 외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의 글로벌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간 경계 제거</li> <li>- 시장경쟁 격화</li> </ul>

## (4) 소비자에의 영향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소비자에게 <표 II - 4>와 같은 영향을 미친다.

&lt;표 II - 4&gt;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 구입</li> <li>- 신속하고 편리한 구매</li> <li>- 상품선택의 폭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의 노출 및 악용</li> <li>- 불량품 반품의 어려움(해외거래시)</li> <li>- 거래사기 빈발</li> </ul>

## (5) 정부에의 영향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표 II - 5>처럼 정부의 역할이나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lt;표 II - 5&gt;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정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조세 및 관세의 변화로 정부수입의 영향</li> <li>- 통화 및 지불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li> <li>- 암호화, 소비자 보호, 지적소유권 보호 등에 관한 정책 수립</li> </ul>
---

## 3. 국내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전망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무엇을 전자상거래로 볼 것인가 하는 개념의 다양성, 대다수 업체들의 전통적 상거래와 인터넷 전자상거래 병행으로 인한 매출액과 예측곤란, 통계자료 수집곤란, 통계기준의 불일치 등으로 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실제 거래규모나 잠재적인 시장규모를 예측하기는 용이하지 않다(OECD, 1997b).

특히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활동 관련 규모의 예측에는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기관별 또는 국가별로 전자상거래 규모에 의한 통계수치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향후 3~4년 내에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가 비약적인 증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1995년을 기점으로 1997년에는 260억 달러, 2001~2년경에는 3,300억 달러, 2003~5년경에는 1조 달러로 전망하고 있으며, 예측

##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치의 80% 이상을 기업간 거래로 보고 있다(OECD, 1997b).

**<표 II - 6>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예측**

(단위 : 백만 달러)

기 관	1995년 - 1997년	2000년 - 2002년
IDC	1,000	117,000
INPTU	70	165,000
ActifMedia	24,400	1,522,000
Data Analysis	2,800	217,900
Yankee	850	144,000
EITO	475	262,000
AEA/AU	200	45,000
Hambrecht & Quest	1,170	23,200
Forrester	8,000	327,000
Morgan Stanley	600	375,000

자료 : OECD,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Electronic Commerce : Preliminary Findings and Research Agenda", DSTI/ICCP(98)15/PART3.

미국 Forrester Research사는 1997년 사이버쇼핑 시장규모는 인터넷의 사용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1억8천8백만 달러, 1998년에는 23억7천1백만 달러, 1999년에는 39억9천만 달러에 달하는 등 연간 2배 이상의 급신장을 보여 오는 2000년에는 65억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Forrester Research, 1997).

**<표 II - 7>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 한국-백만원, 전세계-백만 달러)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한국	1,400	6,285	15,004	34,484	61,396
전세계	528	1,188	2,371	3,990	6,570*

\* 최대 6,000억 달러까지 예상

자료 : 통상산업부, 「전자상거래 세계 동향과 우리의 대응--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중심-」, 1997. 7.

영국의 Economist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오는 2020년이 되면 전세계 교역량의 30% 이상을 점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내의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나, 1996년 6월 인터파크와 롯데인터넷백화점 등 2개의 인터넷 사이버쇼핑몰이 개설된 이후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많은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시장의 규모는 1996년에 약 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어 미미한 수준에 있지만, 세계적인 확대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크게 증가하여 오는 2000년에는 약 613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

전자상거래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을 부문은 정보전송부문과 정보생성부문으로 전망된다(윤창인, 1998). 정보전송부문은 우편서비스, 통신, 라디오 및 TV 등이며 정보생성부문은 금융, 오락, 여행사 및 증권브로커 등이다. 소프트웨어, 여행서비스, 오락 및 금융 등 전자적으로 전송 가능한 제품은 기업간 상거래에서는 물론, 기업과 소비자간의 상거래에서도 주도적인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III.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규범화 동향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전자상거래가 급팽창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 확보 및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OECD, WTO, APEC, UNCITRAL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 EU,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자국의 관련 법체를 정비하는 등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림 III - 1>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규범화 동향

#### 1. 국제기구의 규범화 동향

거의 모든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기구는 물론, 지역경제협력기구에서도 전자상거래가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장애요인의 제거와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국제적인 규범제정 논의로 귀결된다. 정부의 역할은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조성에 국한하고 창의적인

민간부문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기본원칙에 있어 각 기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에 기초하고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제적인 합의와 전제로 하는 것도 유사하다.

### (1) OECD

OECD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하였고, 가장 심도있게 전개하고 있는 국제기구로서(이성봉·김유찬, 1998), 산하의 각 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주요 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개별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1980년부터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3개의 지침과 1개의 선언<sup>27)</sup>을 채택한 바 있다(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1998). 특히 재정위원회(CFA), 정보컴퓨터통신위원회(ICCP), 소비자정책위원회(CP)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전문가 작업반을 별도 구성하고 과제별 지침을 개발하여 국제적 논의 의제로 상정하고 있다.

<표 III - 1> OECD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범화 동향

분야별	주요 과제	관련 위원회
거래의 안전	- 구매자 보호 - 지불수단 및 지불체계 - 지적소유권	소비자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규제 및 법집행	- 관세 등 조세 부과	재정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보안 및 사생활	- 암호화정책 - 사생활	정보통신위원회
사회문화적 영향	- 불건전 정보의 규제 - 문화·언어의 다양성 확보	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인프라	- 인프라의 확장/ 표준화 - 공평한 접속조건	정보통신위원회
기타	- 직업창출/ 중소기업 - 정부/ 교육/ 관광/ 노동분야 등의 활용	산업위원회 각 해당 위원회

자료 : 라봉하,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의 논의동향”, 「나라경제」, 제83호, 1997. 10, p. 51.

OECD는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핀란드 투르크에서 기구 전체 및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1997.11)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확대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OECD 기간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는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윤창인, 1998).

또한 OECD는 핀란드 투르크회의 후속 모임으로 1998년 10월 7-9일 기간 중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국경없는 세계 : 범세계적인 전자

27) 사생활가이드라인(1980), 국경간 정보이동에 관한 선언(1985),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1992), 암호화정책 가이드라인(1997).

상거래의 잠재력 실현(A Borderless World: Realiz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이란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소비자와 사용자에 대한 신뢰 구축, 디지털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의 확립,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기반구조의 확충,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혜택의 극대화 등이 논의되었다(이원식, 1998).

### (2) WTO

국제무역질서를 논의하는 WTO는 전자상거래 관련 제품에 대한 무관세화를 비롯한 무역관련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윤창인, 1998). 1998년 2월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5월 개최된 제2차 각료 회의에서 무관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대하여 1999년 각료회의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각료선언<sup>28)</sup>을 판결시켰다. 이는 비록 한시적이지만 디지털 제품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전송이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각료선언에서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모든 무역관련 과제 검토를 위한 종합작업계획을 개발하여 1999년 각료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이사회는 1998년 7월 22일 WTO내의 전자상거래 관련 각 조직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작업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WTO내 해당기구, 즉 서비스교역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무역·개발위원회와 정부조달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분야 쟁점사항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1999년 6월 30일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WTO, 1998).

### (3) APEC

APEC에서 논의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식적 접근은 1999년 11월 말레이시아 정상회의까지 관련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 특별작업반(Task Force)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 작업반은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주요 과제 및 APEC 회원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이해 제고와 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방안의 도출을 핵심으로 하였다.

이 작업반의 가동은 1997년 1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5차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APEC 정상들은 “예전 가능하고 일관된 규제환경과 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증진하는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998년 정상회의시 보고”할 것을 각료들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료들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 6월 통상장관 회의시 중간보고를 하고 추가지시를 반도록 선언문에 명시하였다.

그 결과 1998년 2월(말레이시아 페낭)에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에서 호주의

---

28)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W/2.*

체안에 따라 APEC내에서 전자상거래 논의를 전담할 한시적인 조직으로 특별작업반이 구성되어 호주와 싱가포르를 공동 의장국으로 선출하고 단계적인 작업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APEC 전자상거래 특별작업반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① 전자상거래의 안정성, 신뢰성 제고방안 ② 통신 인프라 관련 사안 ③ 조세, 관세 등 정부규제 관련 쟁점 ④ 민관 협력 및 역할 분담 ⑤ 전자지급제도, 배달제도 등 물류관련 쟁점 등이다(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1998).

#### (4) UNCITRAL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는 1992년 전자자금이체 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국제자금이체에 관한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1996년 6월 전자거래에 관한 제도적 장애 제거를 기본 목적으로 한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제정하였다(정 완영, 1997). 이 모델법은 전자거래에 관한 제도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이를 통해 전자상 거래 관련 각국 법의 조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모두 2부 1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전자상거래 일반(Electronic commerce in general)', 제2부는 '특정 영역에서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in specific areas)'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UN국제상거래위원회는 '전자서명에 관한 통일규칙'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이러한 논의는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1997년 시작된 UNCITRAL 실무 작업반 회의(Working Group Conference)는 1998년 6월 29일 2주간 일정으로 UN본부에서 열린 관련법 초안 4부 19개조 가운데 상당부분을 타결시켜 1999년 중 완전 타결된 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1998).

## 2. 주요국의 규범화 동향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OECD, APEC, G7, EU 등 국제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었으나, 인터넷의 상용화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전망이 밝게 보이면서 선진국, 특히 미국 주도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개별적으로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대응방법은 상이하다.

#### (1) 미국

미국은 인터넷에서의 기술우위를 배경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에 가장 앞장서 왔으며,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 구상)"을 발표하는 등 이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와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추진을 민간기업 주도로 유도하고,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를 국가정보인프라(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의 주요 용용분야로 선정하여 수요창출 및 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다(박복재, 1998).

&lt;표 III - 2&gt; 미국의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의 주요 내용

핵심 과제		주요 내용
재정적 문제	관세 및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상거래를 통한 '자유무역제도'의 타당성</li> <li>- WTO 등을 통해 인터넷 무관세화의 국제적 합의 도출</li> <li>- 내국세로 현존하는 것 외에 새로운 세금부과 금지</li> </ul>
	전자지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교한 전자지불제도 채택을 위한 국제공동 연구</li> <li>-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국가별 접근방법 분석</li> </ul>
법적 문제	상거래 통일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2년 내에 인터넷 상거래의 국제통일규범 마련</li> <li>- 거래당사자간의 자유계약, 기술중립 등이 기본원칙</li> </ul>
	지적재산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IPO가 채택한 저작권협정과 공연 및 음반협정의 이행 법안 마련 및 비준 준비</li> <li>- 데이터베이스, 특허권, 상표권과 인터넷 상호 등의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li> </ul>
시장접근 문제	개인생활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의 수집/ 가공/ 활용시 개인생활 보호</li> <li>- 정보의 통지/ 선택/ 보안/ 접근을 업계 자율규제로 해결</li> </ul>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이 보장되는 GII(Global Information Infra) 구축</li> </ul>
통신 인프라와 정보기술	인터넷 컨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인 자유경쟁이 보장되도록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각종 정부규제 철폐(회선임대시의 과도한 가격, 진입제한 관행 등)</li> </ul>
	기술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관세장벽으로 이어지는 과도한 내용 평가규정 폐지</li> <li>- 내용 및 광고규제, 허위정보 규제 등이 주요 관심사</li> </ul>

자료: 노재범, "인터넷 라운드와 기업의 대응",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1997. 8. 6, pp. 5-6.

미국정부는 1993년 10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연방조달 효율화"를 발표하였고, 1997년 1월부터 연방조달 업무에 전자상거래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1994년 16개 지역에 "전자상거래센터(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ECRC)"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1996년 12월 미 백악관 수석자문관인 Ira Magaziner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팀은 전자상거래 청사진으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1997년 7월 1일 발표하였다. 이 구상은 역동적이고 범세계적인 시장으로서 초고속정보망의 등장에 대하여 일련의 원칙과 정책을 제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할 국제적인 여론의 합의를 위한 지침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7월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Global Electronic Commerce Initiative"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금결제, 기술표준, 개인정보 보호, 암호화 등에 대한 미정부의 포괄적인 입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터넷 상거래 비관세화, 상거래통일규칙 제정, 소비자·저작권보호 방안 강구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전자상거래정책은 12개 부처로 구성된 FECAT(Federal Electronic

Commerce Acquisition Team)가 담당하고 있으며, 표준 및 기술개발은 상무부 산하 국가 표준기술원(NIST)이 관여하고 있고, 국방부 및 국세청 등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서민교, 1998).

미국의 기본구상은 전자상거래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 규제적이고도 시장 지향적인 접근, 즉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2) EU

EU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민간기업들은 정보기술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과 응용, 정보공유 및 공동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고 범유럽 정보통신망(Trans-European Network)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임광선 외 2인, 1998).

1994년에는 “전자상거래전략(Electronic Commerce Initiative)”를 공식 출범시켜, 소프트웨어 개발과 네트워킹 등을 추진 중에 있다. 1997년 4월에는 “유럽의 전자상거래전략(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여 2000년까지 추진해야 할 4개 핵심분야, 즉 ①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② 역내에 일관된 제도적 틀 마련 ③ 기술개발 촉진 및 인식제고를 통해 역내기업에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 ④ 국제기준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1997년 7월에는 독일의 본(Bonn)에서 유럽국가 및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 33개국의 경제·통상·정보통신장관들이 참가한 “세계 정보네트워크”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추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본선언(Bonn Declaration)’(<표 III - 3> 참조)을 채택하였다.

<표 III - 3> 본(Bonn)선언의 주요 내용

기본 방향	- 인터넷과 관련 규제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이를 통한 업체간 경쟁과 시장의 확대를 촉구함
정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역할은 국제적인 체계조성작업 등 일부 부문으로 국한함</li> <li>- 전자상거래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li> <li>- 암호 프로그램 수출을 자유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각국 정부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함</li> <li>- 인터넷상의 정보는 지적소유권에 의해 보호받아야 함</li> <li>- 불법 정보에 대한 인터넷 중개업체의 책임은 해당업체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이를 막을 수 있었을 경우로 국한해야 함</li> </ul>
공통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이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탈국가성'을 갖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li> <li>-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이용 확대가 경제성장과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인식해야 함</li> </ul>

자료: 서민교, “인터넷 라운드의 대두와 그 대응방안”, 「무역학회지」, 제23권 제3호, 한국 무역학회, 1998. 12, p.250.

또한 EU는 1997년 10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아시아, 미주지역의 업체 및 국제기구 등이 참가한 “21세기를 대비한 세계 정보화사회 건설” 제하의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동향, 국제규범 및 국내법 제정, 업계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3) 일본

일본은 1993년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인터넷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의 전자상거래 도입 및 추진은 민간주도의 미국과는 달리 통산성, 우정성, 대장성 및 법무성 등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신성은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해 1996년 2월 설립된 “전자상거래진흥협회(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 of Japan : ECOM)”를 통해 전자상거래 추진기반을 마련 중이다. 우정성은 1995년 10월 “사이버 비즈니스 협의회(cyber business association japan)”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무성은 1997년 1월 컴퓨터망을 통한 거래보호를 위해 연내에 전자서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통산성은 1997년 5월 “디지털 경제시대를 향하여(Toward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초안을 발표하였다.

소비자 부문과 관련해서는 1997년 1월에 “전자상거래 실증추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전자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거래와 관련된 기술의 표준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 기술기업, 연구기관 등이 서로 연합하여 350개가 넘는 기업과 50만 명 정도의 소비자가 참가하는 19개의 프로젝트가 공표되어 현재 실험 중에 있다(박복재, 1998). 또한 기업 스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Cyber Publishing Japan Consortium, Electronic Commerce Network, Smart Islands Consortium, Smart Commerce Japan, Virtual City Consortium 등이 있다(서민교, 1998).

### (4) 한국

1986년 한국 데이터통신이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제도를 도입한 이래 철강, 자동차, 금융, 유통 등의 부문에서 그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우리 나라는 비록 후발주자이지만,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의 본격적인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시작은 1996년 인터넷에 전자쇼핑몰인 인터파크와 롯데인터넷백화점이 개설된 후부터이다(박복재, 1998).

아직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미미한 실정이나, 세계적 조류와 마찬가지로 향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내시장은 1996년 14조원에서 1997년 62억원, 2000년 6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통상산업부, 1997).

국내에서의 전자상거래의 구현형태는 인터넷의 확장에 따른 전자쇼핑몰 형태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PC통신을 통해 온라인 쇼핑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업체도 서비스 형태를 전자쇼핑몰로 개편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데이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커머스넷(Commerce Net)과 한국과학기술원에 의해 주도되는 메타랜드이다. 한국통신은 인터넷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사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1996년 12월 미국 뉴욕의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본사에서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코리아와 인터넷 전자상거래 보안시스템인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구축을 위한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였다(동아일보, 1997. 8. 22).

### 3. 국제규범화 동향의 평가와 전망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의 논의의 핵심은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해 국제적인 상호협력과 조정을 거쳐서 범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될 수 있는 표준체정이라는 공동과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특히 미국의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 발표 이후, 각국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한경쟁이 가장 먼저 구현되는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서민교, 1998).

먼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전자상거래 추진원칙을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 III - 4>와 같다.

<표 III - 4> 미국, EU, 일본 등의 전자상거래 추진원칙

미국	E U	일본
1. 민간주도 2. 정부의 부적합한 제한 금지 3. 최소한의 정부개입 2. 인터넷의 독특한 특성 인식 5. 전세계적으로 활성화	1. 시장주도하에 전자상거래 확대 2. 규제를 위한 규제금지 3. 단일시장자유에 기반을 둔 규제 4. 사업의 현실성을 고려한 규제 5. 공공의 이해목적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합한 규제	1. 변화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과 신속한 대응 2. 기술과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 3. 전자상거래의 보안과 신뢰 구축 4. 보편적인 접속의 확대 5.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제적 조화

자료: GIIIC Policy Task Force, 'A Comparison of U.S., and MITI Reports on Electronic Commerce', I-WAYS, Second Quarter 1997, p.41.

미·EU·일본 등 주요국들은 민간주도, 시장주도의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되 국제적인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 등 추진원칙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각론에 있어서는 핵심과제별로 자국의 이해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규범화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얹힌 조세, 사생활 보호, 내용물 규제, 소비자 보호 등 개별 사안의 합의 도출에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범세계적인 표준체정이라는 공동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EU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과 EU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표 III - 5>와 같다.

&lt;표 III - 5&gt; 전자상거래의 핵심과제에 대한 미국과 EU의 입장 비교

구 분	미 국	E U	일 본
보 안	핵심 암호화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암호화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의 제한완화 요구	일본도 자유경쟁원칙에 따라 수출규제 반대
기 본 원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시장기능에 위임	기본적인 인식은 미국과 같지만, 사안별로 정부의 탄력적 규제 필요	
관세 및 내국세	on-line 제품 및 서비스에 무관세와 신설 내국세 반대	좌항에 동의하나, 기존 부가가치세는 부과할 예정	일본은 미국에 동조, 개도국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전면적인 면세는 반대
사 생 활	시장기능에 위임하여 민간 자율 규제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은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는 한 반대	
내 용 물 규 제	최소한의 내용물 규제 및 음란물 게재금지는 위헌	불건전 내용물의 유포를 규제(독일의 경우 음란물 게재금지)	

자료 : 서민교, "인터넷 라운드의 대두와 그 대응방안", 「무역학회지」, 제23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1998. 12, p.258.

미국은 인터넷을 무세지대로 하자는 주장과 함께, 기존의 조세 이외의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정영현, 1997). 이러한 미국의 주장이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의 부과를 금지하자는 주장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입장의 기조는 자국이 전자상거래 시대에 주요 수출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의 문제 및 감면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EU는 1997년의 본(Bonn)선언을 통해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여 온라인 거래(인터넷을 통해 주문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세에 동의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1997). 그러나 내국세문제에 대해서는 과세가 투명하고 추가적인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하고 조세회피나 탈세의 가능성이 크므로 세수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비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등 양자의 공동이익이 전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내용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나친 규제 등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방해가 되고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EU는 민간의 자율적인 기능이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 비중이 높으므로 전자상거래에 기

존의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며, 개인정보 보호·내용물 규제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탄력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종화·이성봉, 1997).

이상에서 설명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화 동향에 대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이해 및 입장을 정리하면 <표 III - 6>과 같다.

&lt;표 III - 6&gt; 전자상거래에 대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이해 및 입장

	활동범위/ 거래의 종류	경제주체	자료의 종류	상품의 종류	통신방식
EU(EITO)	○				○
EU(EC)	○		○	○	
OECD	○	○	○		
미국		○			○
일본	○				○

#### IV.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전자상거래는 WTO체제 출범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신무역라운드로 규정되며, 주요 이해당사국간 사전협의에 의해 다각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시작된 것은 1996년 인터넷에 인터파크와 롯데인터넷백화점 등의 쇼핑몰이 개설된 이후이며, 아직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 도입기에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PC보급 확대, 사용자의 편리성 제고 등으로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향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우리 나라가 인터넷시대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국가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국내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서 그 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의 주요 과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규범화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고 우리 나라와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연대하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마련과 함께, 법적·제도적·환경적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 즉 관세 및 내국세, 지적재산권 보호, 보안과 암호화, 사생활 보호, 인터넷 내용물 규제 등 대외적으로 통상현안이 될 수 있는 분야는 WTO, OECD, APEC, UNCITRAL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규범화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기존의 피동적·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국내 현실과 국제적 동향을 조화시킨 대승적 견지에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와 규범화 동향의 핵심적 과제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관세 및 내국세, 지적재산권 보호, 보안 및 암호화, 사생활 보호, 내용물 규제, 소비자 보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요 과제별 국제규범화 동향과 국

내현황, 그리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관세 및 내국세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과 계약이 이루어지되 실물이 오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의 관세와 부가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순수히 화면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즉 소프트웨어라든지 금융, 음악(영화)감상 및 전문서비스 등의 거래에 대한 과세가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서비스의 교역은 현행 관세제도상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관세부과대상이 아니며,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WTO 정보기술협정(ITA)에서 이에 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만큼 관세에 관한 문제는 이미 국제적 논의가 사실상 종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인터넷 거래에 대한 부가세(소비세)의 징수문제가 국제적 현안이 되고 있으며, 유럽에서 주장하는 비트세(bit tax)의 도입여부를 놓고 유럽과 미국의 대립이 침체한 상태이다.

<표 IV - 1> 관세 및 내국세에 관한 국제규범화 동향과 국내현황 및 대응방안

국제규범화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EU는 인터넷 전송 제품은 무관세, 인터넷으로 주문되고 통관 절차에 의한 경우는 신설 관세부과금지에 합의</li> <li>- 미국은 인터넷 관련 설비에 대한 무관세화를 정보기술협정 확대를 통해 추진할 예정</li> <li>- 미국은 인터넷 무역에 전통적인 상거래와 차별화된 세금부과를 금지하는 조세의 중립성원칙을 강조함과 동시에, 신설 내국세 부과금지를 주장하고 있음</li> <li>- 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 의존도가 높은 미국내의 일부 주와 EU 국가들은 세금보호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계속적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li> <li>- 인터넷을 통한 영업자에 대한 소득원천지 국가에서의 과세문제</li> </ul>
국내현황 개선방안 마련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통관절차에 의하지 않은 디지털 재화 무관세</li> <li>- '97년 10월 「세제발전심의회」 산하에 소비과세분과위원회 설치 ·</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을 통한 국제교역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 대응</li> <li>- 무관세 대상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정 명확화</li> <li>- ITA-II(확장정보기술협정) 협상에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 모색</li> <li>- 내국세 신설금지는 각국의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합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을 전망임</li> <li>- OECD 금융재정기구(DAFFE-FA)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조세부과, 조세행정, 관할권 문제 등의 논의에 적극 참여</li> <li>- 전자상거래에 대해 조세의 중립성 원칙과 세수 확보를 고려한 부가 가치세 및 이로 인해 창출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안 마련</li> <li>- 소비세부과와 관련하여 세제가 비슷한 EU와 연대 필요</li> </ul>

한편 인터넷을 통해 영업을 하는 사업자(예컨대 인터넷 법률·회계회사나 전자은행)에 대한 과세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과연 소득의 원천지 국가

가 이를 파세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세 및 내국세 문제에 대한 국제규범화 동향과 국내현황, 그리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표 IV - 1>과 같다.

## 2.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은 하나의 거대한 복사기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상공간을 통해 무방비 상태로 전송되고 있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각국의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왔기 때문에 국가별로 보호여부와 보호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상품이나 저작물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을 통해 자국의 관련법규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국경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의 주소인 도메인명이나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소프트웨어와 저작물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현재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지적재산권 대상은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을 비롯하여 음반, 공연물, 데이터 베이스 등이며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컨텐츠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경제성장 촉진 및 소비자에게 서적, 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 내용물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국제규범화 동향과 국내현황, 그리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표 IV - 2>와 같다.

<표 IV - 2>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규범화 동향과 국내현황 및 대응방안

국제규범화 동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상표권과 저작권, 특허권 등) 보호의 필요성 인식</li> <li>- 미국은 WIPO의 저작권협정과 공연 및 음반협정의 이행법안 마련 및 비준추진</li> <li>-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11월 미 의회는 ‘전자절도금지법’ 제정</li> <li>- 상표권과 인터넷 상호문제는 당사자간 계약에 입각한 자율규제 모색</li> <li>- EU는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소프트웨어의 보호방안 논의</li> </ul>
국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IPO 논의에 대응</li> <li>- 디지털시대를 대비한 저작권제도 정비 중</li> <li>-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개선방향 연구 중</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WIPO 등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li> <li>- 인터넷상의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조화</li> <li>- 지적재산권의 대상, 권리, 효력 등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li> <li>- 특허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기술 보호방안 강구, 상표와 인터넷 도메인명의 잠재적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도메인 할당체계 개선/ 분쟁해결방안 마련</li> </ul>

## 3. 보안과 암호화 문제 및 사생활 보호

전자상거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개인생활 보호와 관련된 혜택간에 균형을 유지할 때만 활성화가 가능하다.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통신망을 활용하여 중요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업과 소비자, 정부 등 거래 당사자간에 중요한 거래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보안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보안시스템 구축과 운용이 필수적이며, 암호기술의 사용에 관한 법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lt;표 IV - 3&gt; 보안 / 암호화 / 사생활보호에 관한 국제규범화 동향과 국내현황 및 대응방안

국제규범화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호화, 전자서명 등이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음</li> <li>- 전자서명과 인증기관과 관련하여 EU는 디지털 방식에 입각한 논의 진행 주장, 미국은 기술중립의 전제하에 논의 진행 주장</li> <li>- 사생활보호를 위해 암호화 기법의 사용</li> <li>- 미국은 핵심 암호화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 미국내 업계·의회 및 EU는 수출규제 완화 주장, 일본은 보안과 인증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지침의 한정된 분야적용 반대</li> <li>- 미국은 사생활 보호를 민간자율규제 주장, EU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범이나 법률을 제정하여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의 반대</li> </ul>
국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암호화지침 및 국제논의 내용</li> <li>- 정보보호센터 등 전문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중</li> <li>- 관련 업계에서는 외국보안기술 도입을 통해 서비스 제공</li> <li>-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개인정보 보호대책 미흡</li> <li>- 1997. 3 정보기술협정 합의</li> <li>- 2000년까지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정보기술제품의 관세철폐</li> <li>-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관련 기술표준은 ETRI, TTA 등을 중심으로 추진</li> <li>- 민간부문의 표준화활동 지원을 위한 ICEC, 커머스넷 코리아 등 민간 단체 설립</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li> <li>- 선진국의 암호기술 보호에 대응하여 암호기술이 국가간에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대응</li> <li>- 전자서명·전자인증 등에 대한 국제규범 및 원칙 마련 작업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내기준 마련</li> <li>- 개인정보보호법 제정</li> <li>- OECD의 암호화 지침 및 사생활 보호지침의 수용</li> <li>-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관련 정보기술의 개발</li> <li>- 국내 핵심기술개발 지원</li> <li>- 암호기술 이용에 관한 법·제도 정비</li> <li>- 한국형 표준 암호기술 개발 및 보급, 공개키 기반 인증체계 구축</li> <li>- ITA-II, 상호인증협정(MRA) 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국제동향의 영향 검토 및 부처간 공조체계 구축</li> <li>- 시장주도의 표준제정 의견수렴을 위한 표준연구기관, 컨소시엄 구성 및 테스트베이스 구축 등 민간부문 지원</li> <li>- 전문가들의 ISO, ITU-T 등 국제표준기구의 적극적 활동을 지원</li> </ul>

이러한 보안과 암호화 및 사생활 보호문제에 대한 국제규범화 동향과 국내현황, 그리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표 IV - 3>과 같다.

#### 4. 인터넷 내용물의 규제 및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를 통한 여과되지 않은 각종 정보의 무제한적 타 문화권 유입은 심각한 사회적·문화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물의 규제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개방된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내용물을 모두 규제하기란 그리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사회·문화적 환경이 상이한 각국의 규제수준 조정은 더욱 어렵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는 판매자에 대한 물리적 실체의 불분명 및 정보부족으로 인해 사기판매와 같은 범죄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 보호 및 거래의 공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물 규제 및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한 국제규범화 동향과 국내현황, 그리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표 IV - 4>와 같다.

<표 IV - 4> 내용물 규제 /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화 동향과 국내현황 및 대응방안

국제규범화 동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각국의 법적·문화적 환경·국민정서의 차이로 인해 합의 곤란</li> <li>- 미국은 최소한의 내용물 규제 및 음란물 게재 금지는 위현, EU는 불건전 유인물의 유포를 규제</li> <li>-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피라밋 판매 등의 사기·기만행위방지, 피해구제 등 소비자보호를 국제규범('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작업 진행</li> </ul>
국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판매·광고기준」 제정</li> <li>-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공연윤리심의위원회 등의 불건전정보 규제활동</li> <li>-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수립 중</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 규제방안 및 소비자 보호지침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li> <li>-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불건전 정보의 명확한 정의 및 공공목적의 정보규제활동의 투명성 제고</li> <li>- 인터넷을 통한 피라밋 판매 등 사기방지에 대한 기술적·법적·제도적 대책 마련</li> <li>- 전자상거래 약관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li> <li>- 민간의 자율적 내용물 규제 강화</li> <li>-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제정작업에 적극적 참여</li> <li>-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보완</li> <li>- 소비자보호 교육 강화</li> </ul>

## V. 결 론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매년 800% 이상 성장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터넷시장은 분명히 새로운 기회이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몇 개월 앞두고 전자상거래가 급팽창함에 따라,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 확보 및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전자상거래의 추진을 국가의 우선순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는 OECD를 비롯하여 주요 국제기구의 중요한 논의의제로 자리잡으면서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 상거래의 80%를 점유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요소 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규범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및 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 나라는 전자상거래 법적 기반 등 환경조성과 국제적 동향에 대한 대응, 기업의 전자상거래 지원 등 공급부문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서둘러야 할 것은 전자상거래의 국내 수용개발이다. 이 기반을 토대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교류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협상에서 입지가 강화되고 유연한 대응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수요부문의 활성화에 대한 민관의 적극적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세문제,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인증·보안 및 암호화기술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등 개별 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파급효과의 분석,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유도와 민간의 창의성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부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이를 규율하는 일정한 법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서부개척시대의 「골드러시」에 비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당시 일부 개척자들이 일확천금을 얻기는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는 점과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은 개척자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팔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도 가장 유망한 분야는 그 기반시설인 통신망과 통신장비, 웹TV 및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기업들도 전자상거래의 기간산업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국내문헌

- 노재범, 「인터넷 라운드와 기업대응」,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1997.  
동아일보, 1997. 8. 22.

- 라봉하,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의 논의동향”, 「나라경제」, 제83호, 1997. 10.
- 박복재, “EDI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관계되는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3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1998. 12, pp.195-232.
- 서민교, “인터넷 라운드의 대두와 그 대응방안”, 「무역학회지」, 제23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1998. 12, pp.233-268.
- 서울신문, 1998. 9. 6.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전자상거래 국제 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1998. 8. 19.
- 윤창인, “APEC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과 한국의 동향”, 「세계경제」, 제1권 제2호 통권 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11, pp.38-48.
- 이원식, “전자상거래 관련 오타와 각료회의 결과와 대응방안”, 「월간 과세」, 1998. 11.
- 이성봉·김유찬, “전자상거래 조세관련 국제논의와 대응방안”, 「통상법률」, 통권 제23호, 법무부, 1998. 10, pp.125-147.
-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정책연구 97-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12.
- 임광선 외 2인,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규범화와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 「국제상학」, 제13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1998. 5, pp.45-64.
- 정영현,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한국 조세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심포지움, 1997.
- 정완영,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의 제정」, 전자상거래법 제정 방향, 한국무역협회, 1997. 10.
- 통상산업부, 「전자상거래 세계 동향과 우리의 대응--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1997. 7.
- 홍준형, 「인터넷 사회에 있어서의 EDI 및 전자거래의 기능, 전자거래 및 EDI 관련 법제도 정비방향」, 한국전산원, 1996.

## 2. 외국문헌

- ECOM, "Electronic Commerce in Japan," 1996([http://www.ecom.or.jp/eng//eng/ec\\_japan/chp3.htm](http://www.ecom.or.jp/eng//eng/ec_japan/chp3.htm)).
-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1997(<http://www.ispo.cec.be/commerce>).
- Forrester Research, 1997. 4. 1([www.cyberatlas.com](http://www.cyberatlas.com)).
- GIIC Policy Task Force, "A Comparison of U.S., and MITI Reports on Electronic Commerce", *I-WAYS*, Second Quarter 1997.
- Ian Walden, *Information Technology & The Law*, Second Edition, MacMillan Publishers, Ltd., 1990.
- OECD, "Electronic Commerc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Governments", Paris, 1997a.

- OECD,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DSTI/ICCP/AH(97)6/REV1, 1997b.
- OECD,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Electronic Commerce : Preliminary Findings and Research Agenda", DSTI/ICCP(98)15/PART3, 1998.
- U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1997(<http://www.whitehouse.gov/WH/New/Commerce/read.html>)
- WTO,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W/2, 1998.
- WTO, "Draft of WTO Work Programm on Electronic Commerce", 1998  
([http://www.insidertrade.com/sec-cgi/as\\_web.exe?SEC\\_world44+B+iwp983932](http://www.insidertrade.com/sec-cgi/as_web.exe?SEC_world44+B+iwp983932)).